##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5

발의연월일: 2021. 2. 15.

발 의 자:박 정·고용진·김민철

김승원 · 김홍걸 · 도종환

오영환 · 유정주 · 이규민

이수진 · 임오경 · 장철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7조의8 신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 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 5.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
	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 • 인프
	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u>말한다.</u>
<u>&lt;신 설&gt;</u>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
	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
	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
	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u>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u>

기획

-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

   전 지원
-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 5.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